

#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임직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

2006. 6. 7제정(지침 제55호)

**제 1 조 (목적)**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병원문화 조성을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 (정의)**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임직원”이라 함은 서울대학교병원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.
2. “직무관련자”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  - 가. 병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
  - 나. 인·허가, 검사, 감사, 단속,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
  - 다. 결정, 감정, 시험, 사정, 조정 등으로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
  - 라.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
  - 마. 병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
  - 바. 기타 병원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

**제 3 조 (준수의무와 책임)** 모든 임직원은 이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.

**제 4 조 (직무관련자와 골프금지)** 임직원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와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원장에게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 5 조 (신고절차)** 임직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행동강령책임관은 병원장에게 보고 후 대장에 기록하고, 이를 유지·관리 하여야 한다.

**제 6 조 (직무관련자와 마작 등 사행성 오락 금지)**

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·화투·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## 부 칙

1. 이 지침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(2006. 6. 7.신설)

[별지 제1호 서식]

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				
신 고 자	소 속			
	직 급(위)		성 명	(인)
신 고 내 용				
일 시		장 소		
참 석 자	※ 소속, 직책, 성명 기재			
비용부담	※ 본인여부,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			
사 유				
비 고				

200 . . . .

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

